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4-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2월 7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작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 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 체육시설”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**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
2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
3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
4.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교 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
2.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
3.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

**제6조(협약체결)**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, 상호협력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7조(표창)**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, 단체 또는 학교,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▶ 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## ▶ 생활체육진흥법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3.3.23>

###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(제2조제1항 관련)

구분	학교체육시설의 종류
운동 종목별 시설	1. 골프연습장 2. 궁도장 3. 게이트볼장 4. 농구장 5. 당구장 6. 라켓볼장 7. 럭비풋볼장 8. 롤러스케이팅장 9. 배구장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. 배드민턴장</li> <li>11. 볼링장</li> <li>12. 빙상장</li> <li>13. 사격장</li> <li>14. 세팍타크로장</li> <li>15. 수영장</li> <li>16. 스쿼시장</li> <li>17. 승마장</li> <li>18. 썰매장</li> <li>19. 씨름장</li> <li>20. 아이스하키장</li> <li>21. 야구장</li> <li>22. 양궁장</li> <li>23. 역도장</li> <li>24. 에어로빅장</li> <li>25. 요트장</li> <li>26. 육상장</li> <li>27. 조정장</li>   <li>28. 체력단련장</li> <li>29. 체육도장</li> <li>30. 체조장</li> <li>31. 축구장</li> <li>32. 카누장</li> <li>33. 탁구장</li> <li>34. 테니스장</li> <li>35. 펜싱장</li> <li>36. 하키장</li> <li>37. 핸드볼장</li> <li>38. 인공암벽등반장</li> <li>39.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시설</li> </ol>
그 밖의 시설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동장</li> <li>2. 체육관</li> <li>3. 샤워장, 탈의실 등 부대시설</li> </ol>